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59 발의연월일 : 2024. 10. 11.

발 의 자:김소희·장동혁·박준태

박덕흠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백종헌 • 고동진 • 인요한

김도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,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 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.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수사, 건설·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,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 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·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 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,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 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8호).

법률 제 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호 중 "제5조까지의 규정"를 "제5조까지 및 제6조의2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	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		
건에 해당하는 재해) 위험직무	건에 해당하는 재해)		
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			
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	
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.	<u>.</u>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8.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 및	8		
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			
관리나 「사법경찰관리의 직			
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			
위에 관한 법률」 제3조부터			
<u>제5조까지의 규정</u> 에 따른 사	<u>제5조까지 및 제6조의2</u>		
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・			
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			
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			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		